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최 은 하 의원)

의 안 번 호	26-138

발의년월일: 2026. . .

발 의 자: 최은하, 고안경, 남해석, 최영섭, 허디모데, 김진천, 배동수, 장영준, 차해영, 장정희, 채종민, 원성혜, 한송이, 김해진 의원 (14인)

1. 제안이유

○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의 단원 자격을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자격 상실 등에 따른 해촉 기준을 정비하며, 객원단원 운영 근거와 단원의 의무를 마련하여 연주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객원단원의 위촉·운영 근거와 정원·자격 및 자격 상실에 따른 해촉 사유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위촉기간을 해당 공연의 준비 및 공연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단원 간 화합과 품위 유지, 기량 향상 및 성실한 연습·공연 참여 의

무를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단원의 거주 요건에 주민등록 기준을 명시하고, 관내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단원 자격을 확대함(안 제6조제1항).

라.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와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라. 입법예고: 2026. 11. 9 ~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객원단원) ① 단장은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연에 필요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원단원에게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해촉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연의 준비 및 공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단장의 직무)”를 “(단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습과 공연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거주하는 구민”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소

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단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객원단원) ① 단장은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연에 필요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객원단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원단원에게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정원,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 및 제8조제4호에 따른 해촉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객원단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연의 준비 및 공연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 (생 략)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단원은 서로 화합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연습과 공연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 및 모집) 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제6조(자격 및 모집) ① ---------- ---------- ----------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사업장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한다.	종사하는 사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단원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신 설>	5.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 다. (생략)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 박채은
연 락 처	02-3153-8352